

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	2011. 6. 8	조례 제1773호
일부개정	2011. 8. 9	조례 제1786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6. 9. 26	조례 제2196호(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)
일부개정	2019. 12. 20	조례 제2562호
일부개정	2020. 3. 25	조례 제2584호(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	2023. 6. 21	조례 제2973호
일부개정	2024. 10. 1	조례 제3160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명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적응·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북한이탈주민”이라 함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“북한”이라 한다)에 주소·직계가족·배우자·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.
2. “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”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, 기관 또는 단체(이하 “지원단체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사회에 조속히 정착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의 범위)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〈개정 2019. 12. 20, 2023. 6. 21〉

1.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
2. 생활·법률·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
3.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지원
4.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·교육사업
5.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·체육행사 개최
6. 문화시설 사용 및 교육프로그램 이용 지원

7. 기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협의회 구성 등)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4. 10. 1>

1. 삭제 <2024. 10. 1>

2. 삭제 <2024. 10. 1>

3. 삭제 <2024. 10. 1>

③ 협의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 10. 1>

1. 당연직 위원

가.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국장

나. 광명고용센터 취업보호담당관

다. 광명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

2. 위촉직 위원

가.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명시의회 의원 1명

나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의 관계자

다.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, 종교 및 복지단체, 기업 등 각종 민간 지원기관의 관계자

라.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24. 10. 1>

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 <개정 2020. 3. 25, 2024. 10. 1>

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. <개정 2024. 10. 1>

제6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0. 3. 25>

1.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사업의 협의·조정에 관한 사항
2.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민·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회의) ①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,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비밀엄수의무 등)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.

제10조(수당 등)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9, 2020. 3. 25>

제11조(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체에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25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의 대상, 방법 및 절차 등은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 <개정 2016. 9. 26>

③ 시장은 법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20, 2024. 10. 1>

④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「광명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2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8. 9 조례 제1786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㉗ 까지 생략

㉘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 중 “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”를 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부칙 <2016. 9. 26 조례 제2196호,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
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12. 20 조례 제256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3. 25 조례 제2584호,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
조례 일괄정비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6. 21 조례 제297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. 10. 1 조례 제316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